- 제31회 전국무용제 -

운영 규정

2022

▶ 기　　간 : 2022년 9월 28일(수) ~ 10월 7일(금)
▶ 주　　최 : 전라남도, 목포시, (사)대한무용협회
▶ 주　　관 : (사)대한무용협회 전라남도지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본) 규정은 전국무용제(이하 “본 대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가 장르

본 대회의 참가 장르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으로 한다.

제3조 행사의 규모와 범위

1. 본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본 대회는 경연부문, 축제부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축제부문은 해당 연도 개최지의 집행위원회와 전국무용제 사무국이 기획 총괄한다.

제2장 조 직 구 성

제4조 구 성

본 대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그리고 자문위원회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13인 내외로 한다.
   나. 운영위원은 주관 시·도의 지회장(당연직)을 포함하여 (사)대한무용협회 임원들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 운영위원장은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당연직)이 맡는다.
   라. 운영위원의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해당 연도 무용제 행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마. 운영위원의 유고 시는 보궐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의 직무
   가.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괄한다.
   나. 운영위원장은 본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의 시행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참가단체의 범위
2) 공연 기간 및 장소
3) 단체 수 및 지원금
4) 참가 신청방법, 기간 및 장소
5) 기타 무용제 개최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회의
가.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운영위원회의 실무는 주최 (사)대한무용협회 사무국이 관장한다.

제6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의 구성
가. 집행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나. 집행위원장은 주관 시·도 지회장(당연직)이 맡고, 집행위원은 (주관 시·도)의 이사들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 집행위원의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해당 연도 무용제 행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라. 집행위원장의 유고 시는 보궐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집행위원장의 직무
가.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고,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괄한다.
나.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인 동시에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의에 힘써야 한다.
다. 집행위원장은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개최지 자치단체장과 면밀히 협력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 회의
가.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집행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집행위원회의 실무는 주관처 및 개최지 (사)대한무용협회 지회 사무국이 관장한다.

제7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의 구성

가. 자문위원회는 주관처 (사)대한무용협회 지회 집행위원장이 선임하며 (사)대한무용협회 주관처의 관련 인사 및 지역 내 전문인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나. 자문위원의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해당 연도 무용제 행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 자문위원의 유고 시는 보궐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조직의 기능 및 역할

1.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 대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가. 본 대회의 종합계획(안) 수립 개최
나. 시행 계획 확정 및 공고
다. 대회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의 심의 조정을 총괄

2. 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본 대회의 집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행사의 시작 6개월 전까지 본 대회의 운영계획 및 실행계획안 수립
나.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본선 대회 행사 진행 계획수립 및 추진
다. 대회 진행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총괄

3.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본선 대회 행사 진행 계획의 수립, 추진에 대하여 자문과 협조를 한다.

4. 조직의 역할

가. 본선 시상 중 개최지 자치단체장 및 관계 기관장 명의의 상은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나.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행정적 편리를 위하여 (사)한국무용협회 사무국에 전국무용제 전담직원을 상주하게 한다.
다. 본 대회에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지회장에게는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행 사 진 행

제9조 추진 방법

1. (사)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고, 개최지로 선정된 (사)대한무용협회 지회가 주관한다.

2. 경연에는 단체부문과 Solo&Duet 부문을 개최한다.
3. 경연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참가하며, 해당 시·도 거주자의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 지역 단체는 비경연 참가를 추진하여 전국 규모 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또한, 외국공연 단체 초청 등으로 공연의 질적 향상과 해외무용문화의 경향을 지역 무용계에 소개한다.
4. 지역무용 활성화를 위해 16개 광역시·도 대표무용단(단체부문)과 안무자(Solo&Duet 부문)는 지역 예선 대회를 거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예선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무용단(단체부문)과 안무자(Solo&Duet 부문)는 해당 지역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 또는 안무자가 참가한다.
5.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무용예술의 수준 향상을 위해 경연제로 시행하고 대통령상 등 시상을 통해 창작 의욕을 고취하게 한다.
6. 창작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작품은 창작무용(신작, 재공연 모두 가능)에 한한다.
7. 본선 대회 개최 경비는 주관 시·도, 예선대회 개최 경비는 해당 시· 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8. 행사 수익금은 주관처인 (사)대한무용협회 광역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무용예술 진흥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제10조 행사 내용

1. 참가단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사)대한무용협회 지회에서 개최하는 지역예선대회를 통해 선발된 단체나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부문 대표무용단과 Solo&Duet 부문의 안무자(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각각 1개 단체로 정한다.
2. 단체부문은 사전추첨을 통해 2개 단체를 1개 조로 구성하여 8일간 매일 1개 조씩 공연하고 Solo&Duet 부문은 사전추첨을 통해 5~6개 단체를 1개조로 구성하여 3일간 매일 1개 조씩 공연한다. 따라서 각 단체에 제공되는 공연기회는 1회로 정한다.

제11조 참가 자격

1. 참가자는 안무자와 출연자를 말한다.
   가. 안무자와 참가자는 지역 예선과 본선 모두 유자격자의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2. 유자격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 예선, 본선 대회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안무자	- 단체부문 ① 본선 대회 개막일 3년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 혹은 개막일 3년 이전부터 해당 시·도에 재직하고 있는 자(해당 시·도 내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재직 증명서만 유효) ② 나이에 제한이 없이 참가 가능
	- Solo&Duet 부문 ① 본선 대회 개막일 1년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 혹은 개막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시·도에 재직하고 있는 자(해당 시·도 내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재직 증명서만 유효) ② 만 35세까지 참가 가능(개막일 기준)
출연자	-본선 대회 개막일 1년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 -단,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시·도에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 중 하나를 제출한 자 ① 본선 대회 개막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시·도내에 재직(재학)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해당 시· 도내 관련 기관 발행 재직 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② 해당 시·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2019년 ~ 2021년) 매년 1회 이상 꾸준히 활동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연 팜플렛 등 각 1종/년 이상 제출 필수 - 매년 1회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중복 출연자가 있을 시에는 감점

3.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무자격자로 간주한다.
4. 본선 대회 참가단체의 출연자는 국·공립 무용단원이 구성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5. 참가자의 무자격에 대한 시상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무자격대상	내 용
안무자	-개인상 및 단체상 시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향후 5년간 출전자격 박탈 -공연제작비(본선) 지급 불가
출연자	-출연자 중 70%를 초과하는 인원이 무자격자인 경우, 모든 개인상, 단체상 수상에서 제외 * 출연진 구성원 비율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반올림을 원칙으로 함 * 본선 대회 기간 중, 경연 당일 행사추진 사무국은 각 참가단체 참가자들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함
※ 본선의 경우, 행사가 종료된 후라도 제출된 서류와 달리 무자격자로 판명되면 시상금과 공연제작비는 환수될 수 있음 ※ 지역 예선의 경우, 지역 무용제 개최 및 열악한 지역 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 무자격자 비율이 기준보다 높은 단체가 참여했다면, 해당 단체에 공연제작비 지원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단, 안무자가 무자격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제12조 참가 작품

1. 본 대회의 참가작품은 국내 안무자의 창작무용(초연, 재공연 무관)에 한하며 경연부문의 공연시간은 **30분 이상 40분 이하로**, Solo&Duet 부문의 공연시간은 **10분 이상 12분 이하**로 제한한다.
2.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단체의 안무자는 변경이 불가하다.
3.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작품명은 변경이 불가하다. 단, 부제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한다.
4. 본선대회에 참가하는 각 광역시·도 대표무용단은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주최인 (사)대한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대한무용협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

1) 지역 예선, 본선 대회

- 단체부문

	제출자료	내 용
1	**본선 참가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 전국무용제 홈페이지(http://dancecountry.koreadanceassociation.org)에서 교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2	**참가자 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 참가자 전원: 안무자, 출연자,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에 출연하는 출연자 전원을 말함 - 본선 대회 개막일로부터 안무자는 3년, 출연자는 1년 이전의 주소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등(초)본
3	**비거주자 중 유자격자 활동 증빙자료**	- 주민등록지가 타지역인 자로서 실제로 해당 시.도에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 1부
4	**참가단체 이력 1부**	- 참가단체의 공연경력 등 주요 연혁
5	**공연계획서 1부**	- 작품명, 안무 의도, 작품 줄거리
6	**공연 대본 1부**	- 대본이 있는 경우 제출
7	**출연자 관련 명단**	- 출연자 전원 명단 1부 - 무자격자 명단(비율 포함) 1부 - 국·공립 무용단 소속 단원 명단(비율 포함) 1부 ※ 작가, 안무자, 출연자 등 참가자 전원의 나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요 이력 사항 및 역할 내역(출연자의 경우 참가작품 배역명기 포함)
8	**창작 윤리 확인서**	- 신청서상 안무자와 실제 안무자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 - 표절 의혹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음
9	**저작권 활용 동의서**	- 개별 출연자들의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실연권) 사용에 대해 동의
10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증**	- 사업에 참여하는 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제출(필수) - 예술인복지재단, 굿티쳐, DFEH 웹사이트 등

11	**예술인고용보험 증빙자료**	-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구체적인 가입 조건은 첨부자료 참조) - (일반예술인) 성립신고서 및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각 1부 ※ 일반예술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상실 신고하여 보험료 정산 - (단기예술인) 성립신고서 1부 - 납부확인서 혹은 완납증명서 등 1부
12	**(사)대한무용협회 지회장 추천서 1부**	- 참가단체 해당 지역(지역 예선 대회를 미개최한 지회)
13	**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단체명으로 작성), 견적서, 통장 사본(단체명), 과세-전자세금계산서 / 면세-전자계산서 ※ 고유번호증 단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모든 서류의 단체명은 동일해야 함
14	**교부금 사용 증빙 서류**	- 현금 인출 하여 사용 불가 / 카드 내역, 이체증으로 증빙 (내역 첨부) - 인건비 사용 시 : 단체와 무용수 간의 계약,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통장 사본(출연자), 주민등록증 사본(출연자), 이체 내역 - 제작비 사용 시 : 제작단체 사업자등록증, 제작단체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or 전자계산서, 이체 내역
15	**정산 관련**	- (사)대한무용협회 정산 시스템(https://js.dlsol.co.kr/)에 등록 - 정산 보고서 1부 시스템에 첨부
16	**프로그램 제작용 자료 (본선의 경우)**	- 해당 지역 지회장 프로필 1매 - 출연자 전원 프로필 - 참가작 공연 사진(지역 예선 공연 시 촬영 요망) 2매

-Solo&Duet 부문

	제출자료	내 용
1	**대회 참가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 전국무용제 홈페이지(http://dancecountry.koreadanceassociation.org)에서 교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2	**참가자 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 참가자 전원: 안무자, 출연자,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에 출연하는 출연자 전원을 말함 - 본선 대회 개막일로부터 1년 이전의 주소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등(초)본
3	**비거주자 중 유자격자 활동 증빙자료**	- 주민등록지가 타지역인 자로서 실제로 해당 시.도에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 1부
4	**안무자 이력 1부**	- 안무자의 공연경력 등 주요 연혁
5	**공연계획서 1부**	- 작품명, 안무 의도, 작품 줄거리
6	**공연 대본 1부**	- 대본이 있는 경우 제출

7	**출연자 관련 명단**	- 출연자 전원 명단 1부 - 무자격자 명단(비율 포함) 1부 - 국·공립 무용단 소속 단원 명단(비율 포함) 1부 ※ 작가, 안무자, 출연자 등 참가자 전원의 나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요 이력 사항 및 역할 내역(출연자의 경우 참가작품 배역명기 포함)
8	**창작 윤리 확인서**	- 신청서상 안무자와 실제 안무자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 - 표절 의혹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음
9	**저작권 활용 동의서**	- 개별 출연자들의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실연권) 사용에 대해 동의
10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증**	- 사업에 참여하는 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제출(필수) - 예술인복지재단, 굿티쳐, DFEH 웹사이트 등
11	**(사)대한무용협회 지회장 추천서 1부**	- 참가안무자 해당 지역(지역 예선 대회를 미개최 지회)
12	**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	- 대표자 : 계약서(대표자 직인),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앞)
13	**교부금 사용 증빙 서류**	- 현금 인출하여 사용 X / 카드 내역, 이체증으로 증빙 - 인건비 사용 : 협회와, 출연무용수 간의 계약서, 통장 사본(출연자), 주민등록증 사본(출연자) - 제작비 사용 시 : 제작단체 사업자등록증, 제작단체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or 전자계산서, 이체 내역
14	**정산 관련**	- (사)대한무용협회 정산 시스템(https://js.dlsol.co.kr/)에 등록 - 정산 보고서 1부 시스템에 첨부
15	**프로그램 제작용 자료 (본선의 경우)**	- 해당 지역 지회장 프로필 1매 - 출연자 전원 프로필 - 참가작 공연 사진(지역 예선 공연 시 촬영 요망) 2매

나. 자료는 본선 개최 1개월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자료제출 이후, 시·도 대표무용단의 사정으로 참가자 일부 변경 등 기제출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사)대한무용협회 사무국과 주관처인 (사)대한무용협회 지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이 제작된 이후에는 출연진의 변경이 불가하다. 단, 진단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예외로 정한다.

3) 본선 대회 출연진의 중복출연은 불가하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

본 대회의 본선 대회 단체부문 및 Solo&Duet 부문 심사위원은 무용계 전문 인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주최 측에서 위촉한다. 6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1인은 주관처인 개최 해당 지역 전문 인사로 각각 2배수 이상 추천하여 주최 측이 위촉·구성한다.

제14조 시상 내역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경연부문 단체상

시상부문	시상 훈격	수상자(단체수)	상 금	비 고
대 상	대통령상	1개 단체	2,000만원	* 부상 : 트로피
금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1,000만원	
은 상	주관처 시장상	〃	5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	500만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예정)	〃	500만원	
	후원기관장 상	〃	500만원	
동 상	주관처 시의회 의장상	〃	300만원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300만원	
	후원기관장 상	〃	300만원	
계		9개 단체	5,900만원	

2. 경연부문 개인상

시상부문	시상 훈격	수상자수	상 금	비 고
안무상	주관처 시장상	1명	200만원	* 부상 : 트로피
최우수 무용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1명	각 100만원	
우수무용수상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예정)	2명		
무대예술상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2명	없음	
계		6명	500만원	

* 시상 훈격은 개최 시·도의 의견을 들어 조정 가능

* 무대예술상 : 음악, 무대미술, 조명, 의상 중에서 선정

3. Solo&Duet 부문 시상

시상부문	시상 훈격(안)	수상자	상 금	비 고
최우수작	주관처지사상	1명	300만원	* 부상 : 트로피
우수작	주관처 시장상	〃	각 1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후원기관장 상	〃		
계		6명	800만원	

4. 우수지회상

시상부문	시상 훈격	수상자수	상 금	비 고
최우수지회상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1명	300만원	* 부상 : 트로피
우수지회상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1명	200만원	
모범지회상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1명	100만원	
계		3명	600만원	

* 단, 우수지회상은 각 지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무용제 지역 예선 심사위원 중 1인을 **(사)대한무용협회에서 위촉 및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연 심사 및 지역 예선(지역 무용제)의 평가 심의 결과로 시상**

5. 특별상

시상부문	시상 훈격	수상자수	상 금	비 고
특별상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2개단체 내외	없음	* 부상 : 트로피
계		2개단체 내외	없음	

* 특별상은 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그 시기적 상황을 극복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 시상할 수 있음

제15조 예산 분담

1. 본선 대회의 개최 경비는 개최지 즉, 주관 시·도에서 부담한다.
2.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지역 예선의 개최 경비와 본선 대회 참가무용단의 소요 경비 일부를 부담한다.
3. (사)대한무용협회에서는 다음의 예산을 부담한다.
   가. 16개 광역시·도에서 개최되는 예선 대회(단체부문) 경비 중 일부
   (*예선 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결과보고서 제출)
   나. 본선 대회 참가단체(단체부문, Solo&Duet 부문) 소요경비 중 일 부
   (*본선 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결과보고서 제출)
   다. 시상금을 포함한 본선 대회 개최 경비 중 일부

제16조 재공연의 제한

무용제에 참가한 작품은 무용제 기간 중 타 공연장에서 재공연할 수 없다.

제17조 운영규정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해당 지회와 안무자가 책임을 진다.

제18조 세부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